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(3심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(기)
2. 원고·신청인	주식회사 우리은행
3. 판결·결정내용	상고를 기각함
4. 판결·결정사유	이 사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
5. 관할법원	대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0년 11월 12일
7. 확인일자	2020년 11월 13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